

용인시 의약품 등 구매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

제정 2015. 11. 6 조례 제1519호
일부개정 2017. 12. 11 조례 제1755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용인시 보건의료 사업을 위한 의약품 등 선정·구매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약품 등 구매 심의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7. 12. 11>

제2조(설치 및 기능) 용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용인시 의약품 등 구매 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<개정 2017. 12. 11>

1. 의약품 구매를 위한 의약품 목록 선정에 관한 사항
2. 삭제 <2017. 12. 11>
3. 의료기기[추정가격(단가)이 2천만원 이상 품목에 한정한다. 이하 같다] 구매 대상 품목 선정
4. 그 밖의 시장이 용인시 의약품·의료기기(이하 “의약품 등”이라 한다) 구매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위원장은 처인구보건소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. 다만, 사례금이나 보상금 등을 주고 받은 비위 행위 사실이 있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. <개정 2017. 12. 11>

1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대학에서 해당 분야의 교수

(부교수·조교수를 포함한다)로 재직 중인 사람

- 2. 의료인의 면허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
- 3. 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
- 4. 관계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·허가를 받아 설립된 해당 분야의 협회, 단체 또는 학회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
- 5.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해당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

④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, 간사는 처인구보건소의 보건정책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, 서기는 처인구보건소의 보건행정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. <개정 2017. 12. 11>

제4조(위원의 임기)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17. 12. 11]

제5조(위원의 위촉 해제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. <개정 2017. 12. 11>

- 1.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
- 2.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및 장기 국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- 3. 위원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
- 4.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
- 5. 위원이 사례금이나 보상금 등을 주고받는 비위 행위 사실이 있는 경우
- 6.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

제6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

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(除斥)된다. <개정 2017. 12. 11>

1.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
2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3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대리인인 경우
4.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경우

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이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. 이 경우에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

③ 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(回避)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12. 11>

제7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8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안건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12. 11>

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이 경우 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의 의결서에 의결사항을 표시하고 서명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12. 11>

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 일정 및 자료를 보내야 한다. <개정 2017. 12. 11>

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,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등을 소집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. <개정 2017. 12. 11>

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심의 안건을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. <개정 2017. 12. 11>

제9조(소위원회 운영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

용인시 의약품 등 구매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

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 <개정 2017. 12. 11>

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7명 이내로 구성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12. 11>

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업무 보건소장이 되며,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지명한다. <개정 2017. 12. 11>

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,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등을 소집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. <개정 2017. 12. 11>

⑤ 위원회에서 위임되어 소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. <개정 2017. 12. 11>

⑥ 그 밖에 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 <개정 2017. 12. 11>

제10조(심의·의결 사항의 처리) 시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보건소 의약품 등 구매에 적용하여야 한다.

[제목개정 2017. 12. 11]

제11조 삭제 <2017. 12. 11>

제12조 삭제 <2017. 12. 11>

제13조(심의의 요청 등) ① 시장은 매년 보건소(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)에서 사용할 성분별 의약품 목록을 작성해 위원회에 제출한다. 연중 수시로 발생하는 신규 의약품 구매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② 위원회는 의약품 목록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목록의 60퍼센트 이상을 경합 품목으로 선정·의결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7. 12. 11]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7. 12. 11 조례 제1755호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보궐위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공무원이 아닌
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
른다.

[별지 제1호서식]

용인시 의약품 등 구매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

안건명							
원안	주문						
	내용						
수정	주문						
	내용						
유보	주문						
	내용						
위와 같이 심의·의결한다. 20 용인시 의약품 등 구매 심의위원회							
구분	성 명	심의 가부	서 명	구분	성 명	심의 가부	서 명
		가·부				가·부	
		가·부				가·부	
		가·부				가·부	
		가·부				가·부	
		가·부				가·부	
		가·부				가·부	

[별지 제2호서식] 삭제 <2017. 12. 11>